



설계도면 및 엔지니어링 데이터의 비밀관리성 요건 충족 여부 및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사건

32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일본 도쿄지방법원	사건번호	평성15년(와) 제26571호
판결 일자	2005. 3. 30.	판결 결과	원고 패소
원고	주식회사 파세크		
피고	주식회사 엘텍스 외 6인		
참조 법령	부정경쟁방지법, 민법		
영업 비밀	고객의 공장시스템 등에 관한 설계도면 및 엔지니어링 데이터		
키워드 (Keyword)	영업비밀, 직원 빼돌리기, 허위사실 유포		

02 사건 개요

원고는 식품공업, 화학공업, 약품공업 관계의 자동제어부분에 관한 설계, 시공 및 유지 관리 등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피고회사는 전기, 계측 및 자동제어설비 등의 공사 청부 및 측정장비, 자동제어기기 등의 설계, 제작 등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며, 원고와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다.

03 주요 쟁점

원 고	⇒	⇐	피 고
피고들은 원고의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하였고 이를 불법 삭제하였다.			원고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비밀로 관리되지 않았으므로 영업비밀이 아니다.
피고들이 한꺼번에 직원 6명을 빼돌리기한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직원들은 원고의 경영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원고의 장래에 불안을 느끼고,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원고를 퇴직하고 피고회사에 입사한 것으로서 결탁하여 전직한 것이 아니다.
피고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신용을 훼손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항 14호 위반에 해당한다.			피고들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바 없다.

04 판결 요지

원고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전제가 되어야 할 영업비밀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장 자체가 부당하다. 또한 비밀관리성, 유용성, 비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2조 4항 소정의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들이 원고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취득해 삭제한 것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부정경쟁방지법 3조에 따른 금지청구 및 동법 4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이유가 없다.

피고들이 공모하여 피고직원들을 피고회사에 일제히 빼돌렸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상기 주장에 반하는 진술이 존재하므로 인정할 수 없다.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주요고객이었던 AJEC를 비롯한 고객, 하청업체 등에 원고의 재무내용이 매우 나쁘고, 마치 파탄직전의 상황에 있는 것처럼 선전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상기 주장에 반하는 진술이 존재하므로 인정할 수 없다.

05 Key Point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용의 특징이 전제되어야 하고, 비밀관리성, 유용성, 비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는 직원 빼돌리기는 불법행위(일본민법 709조) 및 고용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회사가 재무내용이 매우 나쁘고, 파탄직전이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항 14호 위반, 불법행위(일본민법 709조) 및 고용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